구매 계약서 Sample { 전면 }

< 주 의 >

본 양식은 기본적인 법정 기재사항만을 예시한 것으로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매 계 약 서

구매자 기본정보			
성 명		회원번호	
주 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상품 수령 방법 (V)			
직접수령	☐	택배수령	☐
배송주소			

상품 주문 내역					
상품번호	상품명	단가	수량	금액	PV

상품 결제 사항					
현금결제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사항	카드종류	카드번호	승인번호	할부기간	유효기간

※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회원이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조합은 공제번호를 발급합니다. 본 주문을 조합이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합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상품 주문을 확인, 동의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직 접 판 매 대표이사 ○○○

서울시 강남구 *** *** TEL.02-***-**** *****@macco.kr

구매 계약서 Sample { 후면 }

재화 대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7조, 시행령 제11조 참조]

재화 등을 구매한 대금은 주문과 동시에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직접판매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재화 공급 방법 및 시기 ➡ [법 제16조 및 제7조 참조]

구매한 재화의 경우 직접수령이나 택배수령 중 선택가능하며 택배수령의 경우 대금결제 확인시점부터 통상 0일안에 배송합니다.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 [법 제17조 및 제8조 제1항 참조]

소 비 자	판 매 원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가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4.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5. 다단계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1.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2.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효과 ➡ [법 제18조 및 제9조 참조]

1.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재화등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만약 지연될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3.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청약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제한사항 ➡ [법 제17조, 시행령 제25조 참조]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2.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한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에 한함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소비자 분쟁에 관한 사항

1. ㈜직접판매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 성분, 함량, 유통기한, 용법, 용량 기타 품질 표시 내용을 보증합니다.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법, 용량, 보관, 취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판매원은 소비자보호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보호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3. 소비자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판매의 상품구입 또는 사용한 소비자는 동 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상품 및 사업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접판매 소비자상담실 : 02-***-**** 한국소비자원 : 1372**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보상 내용
소비자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대금 환급 금액 100% (매3개월 기간 동안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판매원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금 환급 금액 90% (매3개월 기간 동안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통보서					
수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 명	대표이사 귀하	연락처		주 소	
발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 명		연락처		주 소	
계약 관련 사항					
상품명			상품수량		
계약 연월일			계약서 수령일 / 제품 수령일		/
계약금액			이미 지급한 금액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사유			상품반환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8조에 따라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서울시 강남구 *** *** TEL.02-***-**** *****@macco.kr